

## < 별첨-1 > 전형단계별 가산점 기준(공무직-사무지원직)

구분	주요 내용
<b>1. 서류전형(1차)</b>	
① <b>[국가유공자]</b>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*에 따라 우대	
10% 가점 취업 대상자	5% 가점 취업 대상자
<b>10점</b>	<b>5점</b>
<p>*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</p> <p>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①항, 제③항 및 지침 적용</p>	
② <b>[장애인] 가점 5점</b> (장애인 트랙 지원자는 가점 적용 제외)	
③ <b>[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지정자] 가점 3점(1회에 한함)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16년 이후 재단 체험형 인턴 경력자로서 우수인턴으로 지정된 사람 → <b>가점 3점</b></li> <li>▶ 단, 가점 활용은 1회에 한하며, 1회 가산점 활용 시 향후 재단 채용에는 적용 불가('22~)</li> </ul>	
④ <b>[비수도권 지역 인재] 가점 3점</b>	
▶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했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사람 / [별첨-2] 참조)	
⑤ <b>[저소득층] 가점 3점</b>	
▶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관련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
◆ <b>(공통사항) 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</b>	
▶ 단, ③ 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 지정자, ④ 비수도권 지역인재, ⑤ 저소득층 가점은 중복 시에도 종합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	

구분	주요 내용
<b>2. 필기전형(2차)</b>	
① [국가유공자]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우대	
10% 가점 취업 대상자	5% 가점 취업 대상자
10점	5점
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①항, 제③항 및 지침 적용	
② [장애인] 가점 5점(장애인 트랙 지원자는 가점 적용 제외)	
◆ (공통사항) ① ~ ②의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	

<b>3. 면접 전형(3차)</b>	
① [국가유공자]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*에 따라 우대	
10% 가점 취업 대상자	5% 가점 취업 대상자
10점	5점
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①항, 제③항 및 지침 적용	
② [장애인] 가점 5점 부여(장애인 트랙 지원자는 가점 적용 제외)	
◆ (공통사항) ① ~ ②의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	

※ '23년 채용 시, 가산점 부여범위 및 배점, 방식 등 검토 후 전면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